

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8. 25.

하동군의회의장 강 대 선

1. 규칙명: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제안이유

-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사람을 뜻하는 ‘간사’와 위원장 다음가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‘부위원장’은 그 의미가 달라 간사와 부위원장 명칭을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하동군의회 위원회에서의 ‘간사’를 실제 역할에 부합하는 ‘부위원장’으로 변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함(안 제59조, 제67조, 제68조, 제70조)

4. 의견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유무와 사유, 수정의견)
- 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 방법

- 1) 팩스: 055-880-2939
- 2) 하동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hdcl.go.kr>) 열린마당(의회에 바란다)
- 3) e-mail: jina927@korea.kr

붙임 1.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 끝.

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규 칙 명: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규칙안 내용(조항)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

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1항제3호 중 “간사와”를 “부위원장과”로 한다.

제67조제1항 후단 중 “간사가, 간사도”를 “부위원장이, 부위원장도”로 한다.

제68조제3항 중 “간사와”를 “부위원장과”로 한다.

제70조 후단 중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간사와”를 “부위원장과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9조(의안 등의 상정시기) ① 위원회는 의안 등이 그 위원회에 회부(재회부는 제외한다)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. 다만,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의결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.	제59조(의안 등의 상정시기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그 밖에 위원장이 <u>간사와</u>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: 5일	3. ----- <u>부위원장과</u> ----- -----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67조(심사보고) ①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그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<u>간사가</u> , 간사도 이에 해당하면 제9조제3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보고할 수 있다.	제67조(심사보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<u>부위원장이,</u> <u>부위원장도</u> ----- ----- -----.

② (생 략) 제68조(회의록) ①·② (생 략) ③ 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<u>간사</u>와 해당 전문위원이 서명한다. ④ (생 략) 제70조(준용규정)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는 본회의에 관한 제1장부터 제3장까지 및 제8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“의원”, “의장”, “부의장”, “사무과장” 및 “본회의장”은 각각 “위원”, “위원장”, “<u>간사</u>”, “소속 전문위원” 및 “위원회회의장”으로 본다.	② (현행과 같음) 제68조(회의록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부위원장과</u>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 제70조(준용규정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<u>부위원장</u>----- -----.
--	---